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배출자 관리요령

(관련법령 : 폐기물관리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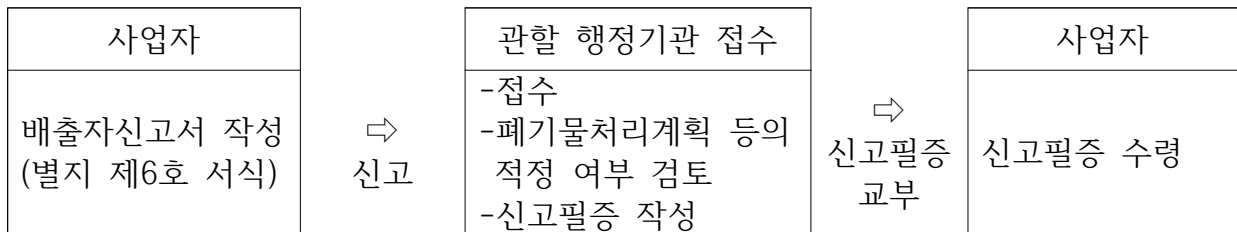
■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법 제2조제3호)

-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배출자 신고

(법 제17조제2항,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 ▶ 신고대상 :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평균 100kg 이상 배출하는 자
- ▶ 신고기관 : 각 행정복지센터 친환경과 환경팀
- ▶ 신고시기 : 사업개시일 또는 폐기물을 배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업무처리 절차



☞ 위반시 법 제68조(과태료)제1항제1의3,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

(법 제17조제2항, 시행규칙 제18조제4항)

▶ 신고대상

- (1) 신고한 사업장폐기물의 월평균 배출량이 100분의 50이상 증가한 경우
☞ 월 평균 배출량은 전년도 1년간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
- (2) 신고 당시에는 배출되지 아니한 사업장폐기물이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새로 배출되는 경우
- (3)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 단순히 행정구역의 조정으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 폐기물 배출자의 변경으로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신규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여야 함
(양도·양수 또는 임대 등으로 상호 또는 소재지 변경 없이 대표자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대상이 아님)

-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으로 관할 행정기관이 변경되는 경우 배출자는 변경되는 소재지의 관할 행정기관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4)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변경한 경우

- 처리방법은 동일하고 단순히 위탁업소(처리업소)만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위탁처리에서 자가처리, 자가처리에서 위탁처리 등의 경우에는 변경신고

▶ 신고기관 : 각 행정복지센터 친환경과 환경팀

▶ 신고시기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 위반시 법 제68조(과태료)제2항제5호,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폐기물 처리상황 기록·보존 및 보고

▶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기록·보존

(법 제36조제1항,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작성, 최종 기재한 날부터 3년간 보존(별지 제36호 서식)

☞ 위반시 법 제68조(과태료)제3항제7호,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실적보고서 제출

(법 제38조제1항, 시행규칙 제60조제1항)

- 매년도 처리실적은 다음연도 2월말까지 (별지 제49호 서식)

※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으로 작성·입력 가능

☞ 위반시 법 제68조(과태료)제3항제8호,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폐기물 전자인계서 입력(법 제18조제3항, 시행규칙 제20조)

▶ 사업장폐기물 배출 신고자는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

▶ 입력시기 :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에 예약 또는 확정입력

▶ 행정조치사항

(1)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입력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입력한 자

(2)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제때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

▶ 올바로시스템 사용 문의 사항 (≡ 홈페이지 가입절차 및 사용방법)

(1) 올바로홈페이지 : <http://www.allbaro.or.kr>/상단의 고객지원 교육지원센터 참조

(2) 올바로시스템 콜센터 : Tel. 1644-0077 Fax. 0505-822-7805

(3) 한국환경공단 지사 담당 : 서울지사(부천시 관할) Tel. 02-3153-0512~9

☞ 위반시 폐기물관리법 제68조(과태료)제3항제4의3,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사업장 일반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법 제13조제1항, 시행령 제7조제2항,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

▶ 공통사항

- 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은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 외의 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수집, 운반의 경우

-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은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 보관의 경우

- 사업장일반폐기물은 해당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 자체하중 및 보관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 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 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서 보관 하여야 한다.
- 사업장일반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이 시작되는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관하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양이 5톤 미만인 경우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숙성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철강슬래그 및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 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반시 법 제66조(벌칙)제1호,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지도·점검의 종류 및 기준

- ▶ **관련규정**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환경부훈령 제1412호('19.7.29)]

▶ 정기 지도·점검

등급	적 용 기 준	점검 횟수
우수	○ 최근 2년간의 지도·점검결과 위반이 없었던 사업장	1
일반	○ 우수관리 및 중점관리 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 ○ 신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사업장	1
중점	○ 관련법 위반 또는 행정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업장 ○ 최근 2년간 지도·점검결과 위반이 있었던 사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한 사업장 - 폐기물 보관가능기간을 초과하여 보관한 사업장(2회 이상 초과) - 폐기물처리, 시설운영 및 사후관리와 관련한 개선, 사용중지, 폐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 폐기물관리법 제31조 제4항 및 제5항, 제40조 제2항, 제48조, 제50조제3항 관련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및 제43조 - 폐기물을 불법투기 또는 불법 매립한 사업장 	2

※ 점검횟수는 폐기물 배출 200톤/년 미만 사업장 기준임

▶ 수시 지도·점검

- (1) 가뭄, 장마철, 추석·설 연휴 등 환경오염 취약시기
- (2) 환경오염관련 민원 다발지역, 오염우심지역 및 취약지역
- (3) 오염피해 진정 등의 민원이 있는 경우
- (4) 환경오염사고 발생 등 현장 확인 필요시 및 타 기관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등